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 2025. 5. 1.(목) 10:00 〕
〔 본 회 의 장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완 도 군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경과

[illegible]

【의안번호 제3388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4. 조인호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5. 4. 24.

다. 상정일자 : 2025. 4.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도모하고 윤리적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0조~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의견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규칙안 1부. 끝.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5조”를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완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 ----- ----- -----.
제3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u>윤리특별위원회</u>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

<신 설>

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

<u><신 설></u> <u>제10조</u> (생 략)	<u>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 <u>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u> <u>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u> <u>제14조 (현행 제10조와 같음)</u>
--	---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행정자치위원회

□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심사결과
제3389호	2025. 4. 14.	박재선 의원	2025. 4. 24.	2025. 4. 24.	원안가결
제3390호	"	허궁희 의원	"	"	원안가결
제3391호	"	조영식 의원	"	"	원안가결
제3392호	2025. 4. 16.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393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394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395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396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397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398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405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이	하	빈	칸	

【의안번호 제3389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4. 박재선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4. 24.

다. 상정일자 : 2025. 4.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범위, 지원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안 제3조, 안 제4조)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의 설치(안 제5조 ~ 안 제7조)
- 그 밖의 지원표시 및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 장소 등(안 제7조, 안 제8조)
- 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및 비용부담(안 제10조, 안 제11조)
- 관리감독 및 평가(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사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여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 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표지판”이란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이나 단체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4. “지원표시”란 완도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축제·행사 또는 구입한 차량·물품·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

한 날

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2. 지방보조금액

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제

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그 밖에 지원표시)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물품 또는 장비를 구입·임차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할 경우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표시 내용은 제4조제2항과 같다.

제9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장소 등) ①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표지판 등의 철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하여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1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설치 및 철거 등의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마다 지원표지판 또는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

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의안번호 제3390호】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4. 허공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4. 24.

다. 상정일자 : 2025. 4.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완도군민의 애국을 고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의(안 제3조, 안 제4조)
-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방법(안 제5조, 안 제6조)
-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시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향상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완도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

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완도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완도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

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군수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제5조제2항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바닥면 가로 2,3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550mm

2. 도안

가. 바닥면 표시



나. 안내표지판



【의안번호 제3391호】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4. 조영식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4. 24.

다. 상정일자 : 2025. 4.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4조,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6조,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현황 및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학습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의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이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발굴과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완도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4. 24.

다. 상정일자 : 2025. 4.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변화하는 시대적 감각과 군을 대표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완도호랑가시’를 군목으로 변경함으로써 완도군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제6호 중 “동백나무”를 “완도호랑가시”로 변경
- 별표 6 중 “동백나무”를 “완도호랑가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제6호에 명시된 군목을 동백나무에서 완도호랑가시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동백나무)”를 “(완도호랑가시)”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군목(<u>동백나무</u>), 군화(동백꽃), 군조(갈매기): 별표 6 7.·8. (생략)	제3조(상징물의 종류) ----- -----. 1. ~ 5. (현행과 같음) 6. ---(<u>완도호랑가시</u>)----- ----- 7.·8. (현행과 같음)

군목·군화·군조(제3조제6호 관련)

□ 군목(郡木) - 동백나무



자유평등 죽청리 동백수림을 비롯 군 전지역에 분포·군생하고 있어 자유평등을 뜻한다.

근면성실 월동기에 장기간 개화함으로써 정열적이고 선구적인 저력이 있어 근면 성실함을 뜻한다.

번영발전 홍자색, 백색으로 이루어진 탐스러운 동백화는 풍부한 밀원을 간직하며 각종 봉접(蜂蝶)과 새들이 날아들어 낙원을 이루니 번영발전을 뜻한다.

□ 군화(郡花) - 동백꽃



차(茶)나무과의 상록교목으로 홍자색, 백색의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는 화밀이 많아 밀원식물로도 좋다. 완도군의 전 지역에 분포되어 군생하고 있으며 이른 봄 백설이 천지에 가득할 때 불타듯 붉게 피는 동백꽃은 우리 군민의 기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 군조(郡鳥) - 갈매기



먹이 찾아 날아드는 갈매기 때는 풍요로운 어장을 알려주는 어군 탐지기가 되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어부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예부터 우리 군민들과는 친숙해져 있고 항구하면 연상되는 갈매기는 나그네의 해환을 노래하는 시정이 절로 풍기는 항구의 텃새이다.

군목·군화·군조(제3조제6호 관련)

□ 군목(郡木) - 완도호랑가시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의 자연 교잡종으로, 조화와 융합을 상징하는 희귀 식물이다. 빨간 열매는 사랑과 박애 정신을 의미하며, 꽃말은 행복과 평화이다. 완도의 지명이 명명된 유일한 나무로써 미국식물학회에 소개되어 국제식물명명규약에 공식 등록되었다. 소중한 지역 향토 수종으로써 완도군의 희망과 미래를 상징한다.

□ 군화(郡花) - 동백꽃



차(茶)나무과의 상록교목으로 홍자색, 백색의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는 화밀이 많아 밀원식물로도 좋다. 완도군의 전 지역에 분포되어 군생하고 있으며 이른 봄 백설이 천지에 가득할 때 불타듯 붉게 피는 동백꽃은 우리 군민의 기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 군조(郡鳥) - 갈매기



먹이 찾아 날아드는 갈매기 떼는 풍요로운 어장을 알려주는 어군 탐지기가 되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어부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예부터 우리 군민들과는 친숙해져 있고 항구하면 연상되는 갈매기는 나그네의 해환을 노래하는 시정이 절로 풍기는 항구의 텃새이다.

【의안번호 제3393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4. 24.

다. 상정일자 : 2025. 4.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은 선거업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안 제19조제14항)
 - 5세 이하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24개월 → 36개월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사항 반영(안 제19조제15항)
 -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사용이 가능하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사용이 불가

-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 반영(안 제19조제16항)
- 별표 4 경조사별휴가일수표
 - 출산 : 배우자(한번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0일 → 20일(25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 1일 → 3일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일부 개정되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3(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4항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하고, “24개월”을 각각 “3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단서의 후단 중 “사용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를 “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 사용이 가능하고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 사용이 불가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군수는 선거업무 종사(선거 총괄, 간사, 서기, 주민등록담당) 등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및 일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특별휴가) ① ~ ⑫ (생략)	제19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삭 제	
⑭ <u>5세</u>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u>24개월</u> 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u>24개월</u> 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⑭ <u>8세</u> 이하 또는 <u>초등학교 2학년</u> -- <u>36개월</u> ----- ----- ----- ---. ----- <u>36개월</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⑮ 제19조제14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7항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u>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u>	⑮----- ----- ----- ----- -----. ----- ----- ----- ----- ----- ----- <u>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 사용이 가능하고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 사용이 불가하다.</u>

<u>⑩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	<u>⑩ 군수는 선거업무 종사(선거총괄, 간사, 서기, 주민등록담당) 등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및 일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
--	---

붙임 1

현 행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붙임 2

개 정 안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번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2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3394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4. 24.

다. 상정일자 : 2025. 4.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인력·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주요내용

-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 6급 이하 직급별 인원 세분화 → 6급 이하 직급별 인원 통합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1) 정원고나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명시된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1. 합 계		751	382	18	114	9	228
2. 정 무 직		1	1	-	-	-	-
3. 일 반 직	가. 소 계	723	379	18	89	9	228
	나. 3급	1	1	-	-	-	-
	다. 4급	1	-	-	1	-	-
	라. 4내지5급	3	3	-	-	-	-
	마. 5급	35	17	3	2	1	12
	바. 6급	188	101	3	17	4	63
	사. 7급	217	127	4	25	2	59
	아. 8급	155	75	5	32	1	42
	자. 9급	122	55	3	11	1	52
	차. 전문경력관	1	-	-	1	-	-
4. 연 구 직	가. 소 계	3	1	-	2	-	-
	나. 연구사	3	1	-	2	-	-
5. 지 도 직	가. 소 계	23	-	-	23	-	-
	나. 지도관	2	-	-	2	-	-
	다. 지도사	21	-	-	21	-	-
6. 별 정 직	가. 소 계	1	1				
	7급상당	1	1				

붙임 2

개 정 안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51	733				18
정무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반직	소 계	723	705				18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35	17	2	1	12	3
	6급 이하	682	667				15
	전문경력관	1	1				-
연구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도직	소 계	23	23				-
	지도관	2	-	2	-	-	-
	지도사	21	21				-
별정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의안번호 제3395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4. 24.

다. 상정일자 : 2025. 4.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건축법」,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안 제20조제2항제8호)
- 검사업무 관련 건축사회 내부규정 개정 시 사전 승인 의무 규정(안 제23조제3항)
- 공개 공지 등의 적합한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27조제6항)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변경
(안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건축법」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현행화하고, 건축 제도 및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및 간이저온저장고

가. 농막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주거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

나. 농촌체류형 쉼터 : 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이하인 것(층수는 1층으로 제한, 층고 4미터 이내)

다.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한 건축사회의 내부 규정 개정 시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별표 5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 한다.	②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평형별 냉동기를 설치하여 농수산물 소형간이저온저장고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15제곱 미터 이하의 구조물</u>	<삭제>
8. 「 <u>농지법 시행규칙</u> 」 제3조의 2 제1호에 따른 농막(연면적 2 0제곱미터, 높이 4미터 이하이 고 주용도가 주거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	8. 「 <u>농지법 시행규칙</u> 」 제3조의 2에 따른 농막, 농촌체류형 쉼 터 및 간이저온저장고 가. 농막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주거목적이 아 닌 것으로 한정) 나. 농촌체류형 쉼터 : 연면적 의 합계가 33제곱미터이하 인 것(층수는 1층으로 제 한, 층고 4미터 이내) 다.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 하인 것

9. (생 략)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
무의 대행 등)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⑤ (생 략)

<신 설>

9. (현행과 같음)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
무의 대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한 건축사회의
내부 규정 개정 시 군수에게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
다.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
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의 설
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
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관
리대장을 제출하고, 군수는 위
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 ----- ----- ----- -----.
1. 높이 <u>9미터</u>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 이상	1. --- <u>10미터</u> ----- ----- -----
2. 높이 <u>9미터</u> 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2. --- <u>10미터</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5]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제27조제6항 관련)

1. 표기 내용

- 가. 안내문 :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 나. 배치도 :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 다. 범 례 :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 사항 등 표시
- 라.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 0.5평방미터(m^2) 이상

관리번호

-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제27조 관련)

1. 공개공지 등 현황

(4쪽 중 제1쪽)

위 치			(구 동 번지)					
건 물 명					사용승인일			
건 축 물 기본정보	대 지 면 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	지상	층		주 용 도			
		지하	층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 화						
		높이 완 화						
		기 타						
	건 축 주				연 락 처			
	설 계 자				연 락 처			
	시 공 자				연 락 처			
공개공지 기본정보	면 적		㎡		유 형 ¹⁾			
	조 성 시 설	휴 게 시 설	벤 치	□설치(개) □미설치		테이블	□설치(개) □미설치	
			파고라	□설치(개) □미설치		운동 기구	□설치(개) □미설치	
		기 타 시 설	조 명	□설치(개) □미설치		기타시설 ²⁾	□설치((개))	
	안내 표지판		설치 방법	□부착형(건물벽, 바닥, 시설물에 부착) □스탠드형(독립된 표지판)				
	감 리 자 ³⁾		(인)(사무소명 :)					
공 개 공 지 배 치 도 ⁴⁾								

공개공지 사진⁵⁾

5) 공개공지 사진은 전체 조성현황 및 이용실태가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최소 2개 지점 이상 촬영하도록 하고, 위반내용 등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Close-up하여 촬영하도록 한다.

(4쪽 중 제3쪽)

공개공지 시설사진 ⁶⁾	
안내표지판(필수)	벤 치
테 이 블	파 고 라
수경시설	조 명
운동기구	기타시설

6) 공개공지 시설사진 중 안내표지판은 의무사항이며, 이외 조성시설물 사진은 조성내역에 따라 촬영하도록 한다.

(4쪽 중 제4쪽)

2. 공개공지 등 사용현황

연번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비고
	성명	주소			

【의안번호 제3396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6.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 2025. 4. 24.
- 다. 상정일자 : 2025. 4.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에 의거, 주소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 공법관계에서의 도로명 주소 사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주소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 제2조제2호)
 - 불목리 685번지외 → 청해진북로 556-110 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 사용의무화에 따라 관련 주소를 현행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불목리 685번지외”를 “청해진북로 556-110 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완도군 청소년 야영장: 완도군 군외면 <u>불목리 685번지외 21필지</u>	3. ----- ----- <u>청해진북로 556-110 외</u> -----

【의안번호 제3397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4. 24.

다. 상정일자 : 2025. 4.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위임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규율범위 변경 및 위임사항 정비
 -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안 제1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안 제4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 개정예 따라 조례 규율범위를 변경하고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을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과 구급환자수송을 위한 구급차량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①·② (생략) <u><신 설></u>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 ----- ----- -----. 제4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1]

수 수 료 (제4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 수 료(원)	비고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1통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규정에서 진찰료와 검사 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1통	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칙 변동시 준용)
3. 사체검안서	1통	30,000	
4.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1,000	※ 건당 1,000원
5. 스케일링	1회	30,000	기본진찰료 별도
6. 복합레진 치료	1회	30,000	기본진찰료 별도
7. 영양제(주사)	1병	실비	약품 구입가 ※ 기본진찰료 및 비급여재료비 별도
8. 유료예방접종	1회	실비	약품 구입가

【의안번호 제3398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4. 24.

다. 상정일자 : 2025. 4.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관내 사용처가 제한적인 교통카드 대신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친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군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산부 교통카드 지급(안 제8조 제목)을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개정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안 제3조제1항제8호)
 - 가임기 남녀의 건강관리
- 풍진예방접종비 지원 신설(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든 교통카드 대신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자녀 출산과 양육을 내실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출산장려금 및 임산부·영유아 지원사업 등)”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를 “출산장려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산부·신생아·영유아·미숙아”를 “모성·영유아·미숙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임산부”를 “모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임산부”를 “모성”으로 한다.

8. 가임기 남녀의 건강 관리

제8조의 제목 “(임산부 교통카드 지급)”을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신확인일 부터 출산 전”을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

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로 한다.

- ② 지원대상자는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풍진예방접종비 지원) ① 군수는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풍진 항체가 없는 가임기 여성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에 따라 <u>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5.·6. (생략) 7. “임산부 교통카드”란 임산부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u>교통비 지원 카드를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u>여성을 말한다.</u>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u><삭제></u>
제3조(<u>출산장려금 및 임산부·영유아 지원사업 등</u>)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하다)는 <u>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u>	제3조(<u>지원사업</u>) ① ----- ----- ----- <u>출산장려</u> <u>를 위하여</u> ----- -----

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신생아·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2. (생략)

3.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
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 7. (생략)

<신설>

8.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 및 영
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③ (생략)

제8조(임산부 교통카드 지급) ①
(생략)

② 지원대상자는 제7조 제2항부
터 제3항에 따른다.

③ 교통비지급은 교통카드(교통
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결제하
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
다)의 발급으로 대신한다.

④ 지원신청은 임신헌인일 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서 [별지 제4
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군수에

-----.

1.-----
모성·영유아·미숙아-----

2. (현행과 같음)

3. 모성 -----

4. ~ 7. (현행과 같음)

8. 가임기 남녀의 건강 관리

9. ----- 모성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현
행과 같음)

② 지원대상자는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완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
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삭제>

④ ----- 임신헌인서상 임
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신 설>

제11조 ~ 제13조 (생략)

제11조(풍진 예방접종비 지원) ①

군수는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예
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풍진 항체가 없는 가임기 여성으로 한다.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붙임1

현 행

[별지 제4호서식]

완도군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

				-				
--	--	--	--	---	--	--	--	--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현재 임신 주수			출산예정일	
☐ SMS 동의여부		동의() 비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항목 : 신청자 인적사항 등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 임신부 교통카드 지급, 지급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기간 : 문서관리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기간(보존기간 지난 문서 폐기 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장은 보존)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위와 같이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완도군수 귀하				
제출서류	임신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당일 발급분) 1부 또는 결혼이민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완도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산부등록 (신청시 PHS 확인)	등록() 미등록()
주소	연락처		
임신주수	출산(예정)일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지원대상자: 신청일 기준 6개월전부터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 신청기간: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완도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에 √표시 해주세요)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관내 보건소(읍·면사무소 포함), 완도군 출산장려사업 등 ☐ 개인정보 파일(DB)수집의 목적 • 완도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자 현황파악 및 관리 • 완도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통계자료 수집·분석·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추진에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및 예금주 등 ☐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완도군 사업 과 관내 보건소(읍면사무소 포함)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시 : 3년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본 조회 및 가족관계등록부 열람·확인·출력 • 출산장려사업 및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완도군수 귀하			
제출서류	진료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1부. 교통비 증빙영수증(진료당일 결제영수증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결혼이민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1부.		

붙임 3

풍진 예방접종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풍진 예방접종비 지원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항체검사일	예방접종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지원대상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풍진 항체가 없는 (검사결과 5IU/ml 미만) 가임기여성(15~49세)		
※ 지원금액: 1인 1회,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풍진 예방접종일로부터 6개월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완도군 풍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자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에 √ 표시 해주세요)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완도군 해당 사업과 및 관내 보건소(읍·면사무소 포함) 완도군 출산장려사업 등 ☐ 개인정보 파일(DB)수집의 목적 - 완도군 풍진예방접종비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 및 관리 - 완도군 풍진예방접종비 지원사업 통계자료 수집·분석·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추진에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및 예금주 등 ☐ 개인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완도군 사업 과 관내 보건소(읍면사무소 포함)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시 : 3년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본 조회·열람·확인·출력 - 출산장려사업 및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서명) 완도군수 귀하		
제출서류	풍진 항체 검사결과지 1부. 증빙자료(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완도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4. 18.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4. 24.

다. 상정일자 : 2025. 4. 2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군 가족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명 : 완도군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완도군 가족센터	완도읍 신기길 56-67	지상 4층 연면적 1,998.33㎡	1층 다목적소통공간, 커뮤니티실
			2층 공동육아나눔터, 언어교실, 한국어교실, 문서창고
			3층 사무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4층 교육실, 요리교실, 동아리실

● 위탁범위 : 완도군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운영(주요)사업

-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업무, 아이돌봄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 결혼이민자 등에 관한 지원사업
- 그 밖에 군에서 정하는 사업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 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사무위탁체결 : 2022. 1. 1. ~ 2026. 12. 31.(5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현) 가족센터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민간에 사무위탁 만료일까지 (2026. 12. 31.)위탁

● 책임한계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음

● 지도·감독

-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감독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련법령	내 용
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03에 둔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5. 10. 30.)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u>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u>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u>자치사무는 완도군의회</u>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⑤ 군수가 제1항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산업건설위원회

□ 심사경과

[illegible]

【의안번호 : 제3399호】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4. 16.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2025. 4. 24.
- 다. 상정일자: 2025. 4.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보고 선양사업의 세부사업이 확대 및 다양화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장보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수요 확대에 따라 유사한 자치법규인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장보고 선양사업의 세부사업 확대와 다양화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 조례인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완도군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 제3400호】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4.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4. 24.

다. 상정일자: 2025. 4.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장보고 선양사업의 세부사업이 확대 및 다양화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장보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수요 확대에 따라 유사한 자치법규인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장보고 선양사업의 세부사업 확대와 다양화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 조례인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완도군 장보고연구회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 제3401호】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4.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4. 24.

다. 상정일자: 2025. 4.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의 신설 조항을 반영하여 군 체육회 및 군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위탁운영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 무상대부 근거 및 위탁운영 수의계약 조항 신설(안 제22조제4항)
-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비상설 규정 명문화(안 제7조제6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본 조례안에 명시 되지 않아 조례안 제22조제5항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 붙임 : 1. 조례안 1부.
2. 수정안 1부. 끝.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의회의 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체육대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4항 신설에 따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를 둔다. <단서 신설>	제7조(구성) ① ----- ----- -----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신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는 사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삭제>
제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삭제>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0일 이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체육회 등 지원) ① ~ ③
(생략)

<신설>

<삭제>

④ 회의-----

-----.

제22조(체육회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체육회와 군 장애인체육대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제22조(체육회 등 지원)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2조(체육회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u> <u>의3제1항에 따라 군 체육회와</u> <u>군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u> <u>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u>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u> <u>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u> <u>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체</u> <u>육회와 군 장애인체육대회에 공</u> <u>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u> <u>· 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u> <u>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u> <u>⑤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u> <u>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u> <u>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u> <u>리법」, 「완도군 공유재산 관</u> <u>리 조례」, 및 「완도군 사무의</u> <u>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u> <u>른다.</u>
<u><신 설></u>	

【의안번호 : 제3402호】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4.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4. 24.

다. 상정일자: 2025. 4.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완도해조류박람회의 정례화를 위해 자치 행사를 위한 근거 필요
- 완도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완도해조류박람회 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박람회 행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명칭) 박람회 명칭 제시(안 제2조)
- (근거)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박람회 추진위원회 설치 가능(안 제3조)
- (위탁) 박람회 주최 주관, 위원회에 위탁 가능(안 제4조)
- (기능) 개최 및 기획, 예산의 교부 신청, 편성 집행 등(안 제5조)
-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안 제6조)

- (위원임기)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안 제7조)
-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시(안 제8조)
- (위원장 직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안 제9조)
- (회의) 위원회 회의 및 의결 요건 명시(안 제10조)
- (제정관리)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운용(안 제11조)
- (보조금의 지원 등) 박람회 유치와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
-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사업계획서를 행사 시작하기 60일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 등(안 제13조)
- (입장료의 징수) 입장료 무료 원칙, 따로 징수 시 위원회의 심의 거쳐 징수(안 제14조)
- (실비보상)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 근거 마련(안 제15조)
- (위원수당, 여비) 참석 위원 수당 등 근거 마련(안 제16조)
- (운영세칙)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세칙 등 추후 심의(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대표적 해양자원인 해조류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조례안 제6조 위원회 구성 시 군수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제6조제3항제4호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군수가 위촉하도록 수정하고,
- 제7조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제3항에 임기를 박람회 예산 정산을 완료한 날 까지한다고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1. 조례안 1부.
2. 수정안 1부. 끝.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조류 가치의 재조명을 위해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완도해조류박람회의 행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박람회의 명칭은 “완도해조류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해조류박람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주최 및 주관) 군수는 박람회의 주최와 주관을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람회의 개최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박람회 예산의 교부신청, 편성·집행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박람회 관련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박람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

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원

2. 각급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 박람회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람회 홍보와 관련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조류 박람회 추진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보궐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자격은 임명된 날부터 완도해조류박람회 예산의 정산을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관리) ① 박람회는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용한다.

② 박람회 행사경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박람회의 유치와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물품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박람회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행사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박람회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에 대한 결산과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 보완사항은 다음 박람회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박람회의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따로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주관,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 무대공연 등에 참여하는 자 또는 단체
2. 세미나, 포럼, 워크숍 발표자 및 토론자
3. 행사장 안내 및 행사 진행 보조, 교통·의료 및 기타 자원봉사자 등

제16조(위원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박람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박람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u>위원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⑤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군수가</u>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①·② (생략) ③ <u>위원의 자격은 임명된 날부터 완도해조류박람회 예산의 정산을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u>	제7조(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의안번호 : 제3403호】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4. 16.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4. 24.

다. 상정일자: 2025. 4.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담부서(안 제3조 ~ 안 제5조)
- 예방 위원회, 예방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8조)
- 예방교육, 안전보건 전문인력, 재정지원(안 제9조 ~ 안 제11조)
- 지도·감독,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안 제12조 ~ 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 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완도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농업인
2. 농업근로자
3. 농업경영체
4. 무급가족종사자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도군 내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예방 위원회)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 · 조사
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도군의 농업 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 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

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